

학생간부 승인 규정

제정 1993. 3. 10. 개정 1998. 7. 24.
개정 2001. 3. 10. 개정 2001. 9. 1.
 개정 2013. 3. 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의 학생간부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간부) 본 규정에 의한 학생간부라 함은 학생회 임원, 각 학부/학과 학회장, 신문사, 방송국 임원을 총칭한다.

제3조(자격) 본 대학 학생간부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을 것.
2.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학기의 등록을 필하고 임명 전(前) 직전학기의 성적이 B(3.0)학점 이상일 것.
4. 해당학기 출석상황이 90%이상일 것.
5. 유급한 사실이 없을 것.

제4조(임기) 학생간부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하고 중대한 과오로 인하여 해임되었거나,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며, 재임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50일미만일 때에는 재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임명) ① 학생회 각 부서장은 학생회장이 지명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신문사 임원 및 방송국 임원은 해당소속 주간 또는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